제 6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01월 28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신갈동주민센터 담당자 : 박 정애 문의전화 : 031-324-6604)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박**	박** 1954-11-17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2019년 01월 18일

신갈동장 [인]